

제397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5월19일(목)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5)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8)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5)
5.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8)
6.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8)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7)
8.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2)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6)
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8)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1)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3)
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9)
1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4)
1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5)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5)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4)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4)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9)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5)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7)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5)
2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3)
2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3)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7)

2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
2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8)
2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2)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
3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9)
3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4)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2)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6)
3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4)
3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2)
3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6)
37. 중앙행정관할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5)
3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4)
3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
4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3)
4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
4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5)
4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1)
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5)
4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1)
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7)
4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3)
4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
4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1)
5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0)
5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8)
5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0)
5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7)
5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50)
5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0)
5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9)
5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6)
5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6)
5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3)
6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

6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1)
 6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7)
 6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0)
 6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5)
 6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5)
 6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
 6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5)
 6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0)
 6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9)
 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6)
 7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4)
 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7)
 7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9)
 7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9)
 7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7)
 7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4)
 7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3)
 7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1)
 7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6)
 8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4)
 8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6)
 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4)
 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5)
 8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5)
 8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6)
 8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19)
 8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5)
 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6)
 8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1)
 9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9)
 9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0)
 9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0)
 9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0)
 9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0)
 9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5)
 9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4)
 9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7)
 9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5)
 9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8)
 100.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6)
 10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102.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7)

103.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8)

상정된 안건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6) 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5) ... 7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8) 7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5) 7
5.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8) 7
6.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8) 7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7) ... 7
8.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2) 7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6) ... 7
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8) 7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1) ... 7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3) ... 7
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9) 7
1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4) 7
1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5) 7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5) 7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4) 7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4) 7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9) 7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5) 7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7) ... 7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5) ... 7
2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3) 7
2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3) 7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7) 7
2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 8
2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8) 8
2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114402)	8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 ...	8
3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9)	8
3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4)	8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2)	8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6)	8
3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4)	8
3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2)	8
3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6) ...	8
3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5)	8
3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4)	8
3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	8
4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3)	8
4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 ...	8
4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5)	8
4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1)	8
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5)	8
4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1)	8
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7)	8
4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3)	8
4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	8
4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1)	8
5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0)	8
5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8)	8
5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0)	8
5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7)	8
5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50)	8
5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0) ...	8
5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9) ...	8
5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6)	8
5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6)	8
5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3)	8
6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	8
6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1)	8
6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7)	8
6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0)	8
6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5)	8
6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5)	9

6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	9
6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5)	9
6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0)	9
6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9)	9
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6)	9
7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4)	9
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7)	9
7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9)	9
7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9)	9
7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7)	9
7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4)	9
7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3)	9
7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1)	9
7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6)	9
8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4)	9
8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6)	9
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4)	9
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5)	9
8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5)	9
8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6)	9
8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19)	9
8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5)	9
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6)	9
8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1)	9
9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9)	9
9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0)	9
9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0)	9
9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0)	9
9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0)	9
9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5)	9
9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4)	9
9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7)	9
9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5)	9
9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8)	9
100.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6)	9
10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9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102.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7)	9
103.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8)	9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제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의 불출석을 허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5월 16일 월요일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 위원님과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님이 예결소위에 새로 보임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률안 상정을 한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법률안 및 추경에 대한 대체토론과 위원님들의 질의는 묶어서 한꺼번에 실시할 예정임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5)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8)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5)
5.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8)
6.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8)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7)
8.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2)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6)
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8)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1)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3)
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9)
1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4)
1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의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5)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5)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4)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4)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9)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5)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7)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5)
2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3)
2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3)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7)

2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
2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8)
2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2)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
3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9)
3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4)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2)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6)
3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4)
3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2)
3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6)
3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5)
3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4)
3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
4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3)
4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
4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5)
4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1)
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5)
4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1)
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7)
4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3)
4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
4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1)
5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0)
5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8)
5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0)
5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7)
5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50)
5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0)
5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9)
5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6)
5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6)
5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3)
6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
6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1)
6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7)
6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0)
6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 의)(의안번호 2113865)
6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5)
6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
6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5)
6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0)
6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9)
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6)
7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4)
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7)
7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9)
7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9)
7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7)
7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4)
7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3)
7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1)
7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6)
8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4)
8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6)
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4)
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5)
8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5)
8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6)
8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19)
8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5)
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6)
8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1)
9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9)
9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0)
9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0)
9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0)
9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0)
9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5)
9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4)
9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7)
9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5)
9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8)
100.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6)
10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102.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7)
103.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8)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0항까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100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제103항까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부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에 이어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확대 지원 및 보정률 상향 등의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병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냉난방비용 지원 예산도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경영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추경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취임할 수 있게 지지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법률안, 예산안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들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향후 정책 추

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급변에 따른 산업·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 등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풀어 나가기 위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과 핵심 광물 비축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에 총 12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집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건설원가 급등, 공사일정 변경 등에 따라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공공 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등 63개 사업에서 총 408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감액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의 절실한 노력이 반영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추경안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된 이영입니다.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팬데믹과 최근 들어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저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며 제

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챙기고 지금 위기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표하고 계시는 국회와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도 또 한 차례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세 둔화 등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활력 제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함께 빠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7개 사업에 총 25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증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 개 업체에 대해 피해 규모에 비례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해 23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체별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차·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둘째,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하여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예산 1조 5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1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셋째, 현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 총 7.7조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 공급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해 긴급경영컨설팅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제도전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빠른 회복을 위한 귀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위원 잠깐,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수정을 해야 될 게 있어서요.

○위원장 이학영 아까 100만 원?

○이철규 위원 예. 이것 장관이 하한액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잘못 읽은 것 같은데요. 속기록을 수정해 가지고……

○위원장 이학영 예. 아까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읽은 오기에 대해서 우리 속기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래 특허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김용래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의 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금년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8억 4600만 원의 감액 재원을 마련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동일 금액만큼 증액하였습니다. 구조조정 재원으로 1일 치 연가보상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를 6억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특허청 추경예산안은 기존 국회에서 편성해 주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을 위한 정부의 노력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요약서 4쪽 상단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순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냉난방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장기적으로는 순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의 현실화를 과약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의 실제 냉난방비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은 최근 텅스텐과 마그네슘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단기 대량 고가 구매를 지양하고 우선 필요 최소한만 비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마그네슘은 습기에 의해서 변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습기능이 있는 별도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킨텍스 3단계 건립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는 공사비 136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을 고려해서 향후 절차 이행과 사업비 적정 반영 등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등 융자 사업 3건의 사업비가, 기존의 융자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을 신설하는 등 비목별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추천서 발급 심사 및 대출 심사 등 관련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6개월분의 이차보전금 지원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추경안은 협약 체결 지연 등 실집행이 부진하거나 점검·평가 결과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0개의 R&D 사업 예산 1661억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정의 효율화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 저하를 방지하는 한편, 점검·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환류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수립·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허청 소관입니다.

특허청 제2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총수입은 변동이 없고 총지출에서 8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업은 경상경비 등의 절감에 따른 것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국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경상경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조 535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6722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4조 8763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저금리 자금으로의 대환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예산 6000억 원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 1200억 원 등 총 7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

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조속한 경영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증부 대출대출은 위험도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불확실성의 증대와 이에 따른 향후 부실률 상승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설정된 12.5배의 보증배수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대출잔여액 등을 고려한 자금 수요액과 다른 보증 프로그램의 운용배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운용배수를 설정한 후에 출연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관련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손실보전금은 긴급한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기존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 피해 규모별 지원 인원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다면 그 내역을 소위원회에 잘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손실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총 1조 50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손실보상금의 보정률 및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상향되는 등 손실보상금 산정 등 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 요소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추계의 근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 등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잘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

○최승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양의원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예, 최승재 위원님 먼저 말씀

하십시오.

○최승재 위원 자료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난 1차 12월하고 금년 2월의 방역지원금 신청 시에 발생한 정보 취약층인 노년층 방역지원금 미신청으로 인해서 당연히 지원받아야 될 소상공인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저희 의원실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들에게까지 다수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됐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이 추경 심사를 위해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 안내 시 신청 마감일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마감일을 공지하다 보니까 인지를 못한 소상공인이 신청 기간을 놓친 사례가 발생했는데 공지 수정 이후와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종료 후 방역지원금에 대한 불용액·전용액 사용 내역 또 다른 자료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의원실로 전달해 주시면 추경안 심사에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양의원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의원영 위원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의원영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그때 이영 장관후보자에게 여쭙 보기도 했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3분의 1의 의결로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당시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7월 이전의 소상공인 손실 추계, 과학적 추계라고 얘기하면서 54조 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의 근거, 추계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때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중기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정책 역량 검증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자료였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현재 추경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적 추계라고 말하는 소상공인 손실 54조 원의 근거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이후에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결소위 심사나 추경 심사를 하려면 현재 이 추경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얘기했던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이 수치가 맞는 건지 확인을 하려면 그 추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근거 자료가 지금까지도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권철승 장관이실 때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영 후보자가 장관이 되셨으니까 이 자료를 하루빨리 제출하셔야지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통해서 이 손실액이라고 하는 54조원의 추계 근거 자료를 꼭 좀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학영 이철규 간사님.

○이철규 위원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재난 피해 실태를 갖다가 파악하고 관리를 해 왔을 겁니다.

특히나 지난해 봄부터 소상공인들이 방역정책에 협조한 이런 협조 관계로 피해를 본 피해 손실을 전액 보상하고 그다음 소급해서 보상하자고 법안을 여야가 동시에 발의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소급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에 그 손실을 정확하게 보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만 당시 정부에서 이 소급적용에 여러 가지 난색을 표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추계의 어려움 또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손실보상을 지난해 7월 이후로만 인정해 주고 그 이전의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의 미비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명목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난보전금이라고 하는 약간 지원에서 보상사이의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추계가 편성됐습니다.

여기의 규모는 그동안 경제계 또 그다음 우리 정부에서 추계한, 그러니까 지난 정부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우리 소상공인들의 규모 이런 것의 잠정 추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된 안일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약 33조 원 정도가 소급 보전의, 소급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후에 일부

추계를 편성하고, 그러니까 지난 1차 추계 때 보전이 좀 이루어졌고 남은 차액이 아마 이 정도로 추계가 돼서 제출을 한 것 같은데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여기서 자료가 없으면 심사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연이 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손실보상법이 입법이 돼 가지고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다 보면 그동안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 수령된 분들이 아마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입증이 되지 못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난 정부 때 정부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 심사 때 추가 논의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소위 논의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위원장 이학영 이영 장관님, 지금 혼선이 약간 있어서 한 가지 좀 제가 정리하고자 말씀드리는데 54조를 추계를 낼 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겠다는 사용 근거만 내셨나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쪽에 손실이 있으니까 54조가 됐습니다 하는 근거가 자료가 있나요?

기조실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양이원영 위원님은 손실보상에 대한 추계까지도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 추계가 돼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이준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위한 데이터 통계를 일부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국세청·금융위, 전부 그걸 가지고 인수위에서 추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추계를 양 위원님이 그 거라도 내 달라고 하면 내주실 수 있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이준희 그건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또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크게 국가적 비밀이 아닐 텐데…… 얼마나 손실을 봤는가 추계치는 있고, 그러나 플러스 이철규 간사님 말씀처럼 또 손실을 입은 쪽의 손실하고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4조의 어느 정도까지는 손실보상을 추계에 따른 계수고 나머지는 피해 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을 텐데 양 위원님 말씀은

도대체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몇 개 업체가 얼마를 손실보상을 받느냐는 추계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신 거니까 그것 국가 기밀이 아닐 텐데 그런 정도는 내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이준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검토가 아니라 내셔야지요. 무슨 검토입니까? 제출하세요. 근거도 없이 어떻게 사용처를 정합니까?

○위원장 이학영 소위 시작하기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질의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행정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서를 접수하여 소위 심사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하실 서면질의는 가급적 빨리, 11시 20분까지 제출하셔서 추경안심사 소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는 만큼 가급적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님 중심으로 질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이영 장관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영 장관님 때는 아니었지만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던 사항인데 안 되고 있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다문화·이주민 소상공인도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대상인데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어가 낯설고 신청 절차도 어려워서 지원금 신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한 번 희망회복자금 지급할 때 여가부와 소진공과 함께 해서 12개 언어 번역본을 만들어서 다문화센터에 뿌렸다고 하거든요. 그때 참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

래서 저번 추경 때 부디 12개 언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언어 몇 개라도 여가부랑 협의해서 다문화·이주민 소상공인들께 좀 안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류호정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챙기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때 그렇게 강조하셨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지고 전 정부와 똑같이 반쪽짜리 손실보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지원금을 손실보전금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이 피해지원금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해 주는 셈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보상과 지원은 다르다고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국회의원 시절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을 해야 되고 정부가 가구 손실을 피해지원금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정부를 맡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드리고 기본 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씩 해 드릴 생각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손실보상은 보상으로, 피해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지급하겠다고 소상공인과 약속하시고 지지받아서 대통령이 되셨는데요.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지났습니다. 지원금을 두고 보상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 제가 민주당 장관님이랑 끝없이 말씀했던 거거든요.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워하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지원금도 지금 보니까 매출이 감소한 데만 대상이었는데요.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처럼 영업할 기회를 빼앗긴 업종은 그와 관계없이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피해가 몰려 있는 부분을 분석을 했을 때 소상공인 부분 중에서도 피해가 극심한 곳에 일차적으로 먼저 추경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감소된 부분에 피해를…… 두텁게

집중하자가 지금 현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력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까지는 포함시키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코로나 전보다는 다른 소상공인 부분에 비해서는 이익이 나셨지만 그 부분도 피해로 볼 수 있다라고까지 확대를 한다면 이번 추정까지는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야당이 되면 다 비슷해지나 봐요.

그러면 이제 폐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에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방역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정부에서 이런 현금성 지원을 할 때 폐업한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50만 원이 전부였는데 만약 진짜 손실보상이었으면 폐업했어도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지원으로 가니까 이분들 그냥 100만 원으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실을 보고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폐업점포 채도전 지원금을 손실보전금 최소 금액인 수준 정도로 상향을 해서 폐업한 소상공인이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실보상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빠지는 거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충분히 다 숙지는 못했는데, 폐업을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 구조 때문에 고용을 제로로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유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실제 2년 동안의 폐업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숫자상으로는 폐업된 비율은 많이 줄지 않고 고용은 제로에 가까운 경우가 있어서 이 숫자에 잡히지 않는 폐업 비율은 슬픈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류호정 위원 크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차별받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정된 재원으로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될 우선 대상자가 지금……

○류호정 위원 많지 않다면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아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재기장려금 쪽으로 일단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정책적으로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류호정 위원 좀 더 상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그런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범위와 피해 정도를 산정을 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해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황운하 위원 예.

○위원장 이학영 말씀하십시오.

○황운하 위원 황운하 위원입니다.

이영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시장 한번 가 보셨어요, 취임하신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황운하 위원 제가 전통시장을 지난 주말에 가 보니까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또 지금 방역 단계가 굉장히 완화됐지만 매출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죽을 맛이예요, 지금.

우리 장관님은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 제가 청문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황운하 위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계신데 이분들 회복을 위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정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공약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황운하 위원 소급적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온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황운하 위원 소급적용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공약으로는 명문화하거나 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방역 지원금과 별개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진다고 유세 현장에서 한두 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소급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후보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 천금과 같이 무겁습니다. 이걸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뒤집습니까? 특 하면 공약 파기하고 합의 파기하고…… 파기 전문이네요.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파기합니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반쪽짜리’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또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손실보상 소급적용하겠다’ 이렇게 강조해 놓고 이제 와서는 ‘손실보전금 이것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 소급적용한 것과 같다’. 국민들을 바보로 압니까? 대충 그냥 말 바꾸기로 해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면서 표만 얻으면 됐고 이제 대통령 당선됐으니 나는 이제 파기해 버리겠다…… 이것만 파기하는 게 아니네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장관님이 현장에 좀 가 보시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버젓이 제시했다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기해 버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또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언제 회복될지 이 막막한 그런 얘기를 실감나게 현장에서 생생하게 좀 들어 보세요. 말 바꾸기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뭐 과학적 추계가 어찌고 손실보전이 어찌고 말만 바뀌 가지고 국민들 현혹시키려고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소상공인·자

영업자들, 경제 회복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손실보상금 소급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손실보상 소급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운하 위원 그렇게 보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황운하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것은 여기 있는 여야 위원들께서 좀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21년 7월 이전에 방역과 관련돼 가지고 이행 점검을 한 데이터가 없는 곳이 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도 없이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법 개정 전까지 손실보전금의 소급적용에 대한 개념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차선 안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는 새로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법이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법 개정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기부 내부의 고민 사항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여야 위원들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이영 장관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보면 ‘손실보전’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습니다. 손실보상과 지원의 중간이라고 이철규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손실보상제, 작년 5월 저희가 만든 손실보상 법제의 입법취지 자체가 매우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전이 지금 23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조정훈 위원 손실보상은 1.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손실보상은 이제는 손실보전금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전은 정부가 임의로 주는 거지요? 의무가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시혜성입니다.

손실보상은 의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조정훈 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무조건 주는 거지요.

저는 이 취지가 중기부가 손실보상에 대한 대상, 선정 금액 기준, 소급적용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의식…… 주긴 줘야 되는데,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하다 보니까 손실보전으로 이게 너무 많이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법 개정의 의지가 좀 있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한번 문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문제가 많이 된 게 여행업, 공연업 등등인데 대통령이 여행하지 말라고 나와서 계속 얘기하고 주요 여행 관광지를 폐쇄하는 게 영업상의 피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맞을까요?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피해가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피해가 맞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사실 피해를 입지 않은 업종이 거의 없을 만큼 핑장이 많은 부분이……

○조정훈 위원 아니지요. 피해가 맞다는 게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맞지요. 관광지를 폐쇄했으니까 여행업은 피해를 입었지요, 정부의 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해외……

○조정훈 위원 아니요, 국내 여행업자의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조정훈 위원 그냥 상식선에서 제가 지금 장관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조정훈 위원 맞지요?

그래서 저는 이 손실보전이라는…… 물품선처럼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인 것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시혜적인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손실보상을 받아야 되는 분이 떼땀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손실보상법을 확대 재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철규 간사님도 입법의 미비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급해서 기존의 법을 이용했지만 지금 영업제한, 집합제한 다 풀렸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역 정책도 복귀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복귀를 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전염 재앙에 또 영업제한, 집합제한 걸릴 수 있는데 그때 작년처럼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법 개정도 하고 정책 개정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필요해 보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법 개정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회의 문제이고 국회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민주당 위원들이 어제도 그제도 계속 법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철규 간사님도 입법에 미비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저희 상임위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면 중기부장관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여야에서 검토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 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취지는 손실보상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 산정 기준, 솔직히 보정률이라는 80, 90, 100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손해를 입었는데, 내가 너를 때렸는데 때린 것에 대한 피해를 80%만 해 줄게 90%만 해 줄게, 이것 논쟁 자체가 안 되는 문제를 고무줄같이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그런데 위원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산업체가 대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가 방역조치를 따라 달라고 지

정한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조차도 상당 부분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폭넓은 보호를 해야지만, 일단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방역 지침을 내린 곳에 그것도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규모를 먼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정책적 우선순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지금 추정 보시면 앞서서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 총 금액의 거의 70%에 가까운 금액이 이번에 대규모로 지출됩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아주 과중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 것에 대한 폭넓은 고민 그리고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한 추가 이런 부분은 중기부에서는 열린 상태로 같이 여야 위원님들이랑 의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추경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TF까지 두고 있냐면, 아까 황운하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통시장 가 봤냐고 하셨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일정을 다 잡아놨는데요. 금주에는 소진공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 큰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예전처럼 못 받으신 분 없게 더 많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수립만으로도 굉장한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은 경청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관님,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소급적용은 권리가 아니고 국가의 채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셨고, 장관 되기 전에 의원 활동하실 때, 후보도 인정하셨습니다, 후보 시절 지금의 대통령도.

기술적인 문제로 데이터가 없으면요, 그러면 최대치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의무 전 사람 입장에서 최대치를 지원하는 게 맞고 그와 비슷한 영업제한, 집합제한 정책이 있을 때 당시의—손실보상 그 법 제정 이후지요—그 데이터를 포

락시로 간접으로 이용해서 최대치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의무는 인정하는데 얼마의 손실을 입혔는지 데이터가 없어서 보전하지 못했다고 하면 피해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울화통이 터질 얘기입니다. 피해는 알겠지만 내가 얼마를 너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몰라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질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개인 사적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때렸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못 주겠다 이것은 듣는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지고 특히 정부라는, 그렇게 데이터가 많고 수백 명 공무원이 있는 집단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의무라는 관점을 인정하시면 최대치를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게 저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초에서 국가나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내지는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얘기를 자리가 바뀌었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개인적으로 1년 반 전에 그런 주장들이 여야에서 많이 일어났을 때 조금 선제적인 일들이 발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이 소급돼서 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보유되기 시작한 시점서부터.....

○조정훈 위원 재난지원금이 소급돼서 지원된 적은 없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아니,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말고요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만든 시점서부터는 정확한.....

○조정훈 위원 소급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수치를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퍼센티지가 됐든 안에 들어가는 임대료나 임차료 일부가 됐든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난 정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기간이 너무 지났고 중간에 그런 보정작업들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과 갖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아주 상이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기가, 법 개정이야 여야 의지가 있으시면 가능한데 의지가 있어서 법 개정이 된 이후에도 아무런 데이터 없이 진행되고 또 중간에 진행된 보정률이 반영된 피해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떤 식으로 산출하거나 조정할 것인지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소급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안까지를 포함해서 가급적 이후에 발생하는 분에 대한 고려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 대신에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데이터라는 것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번 지급드린 것의 70%에 해당하는 대규모입니다. 거기다가 재정적인 금융적 지원까지 하면 40조가 넘는 돈이 또 추가로 풀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정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한국형 PPP 도입 논의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정태호 위원 그만큼 이제…… 채무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 채무, 부채 상황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초과로 늘어났던 부분을, 증가분을 보면 약 119조 가까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또 만기연장, 상황유예를 적용했던 게 약 133조 가까이 되고요.

저기 표가 나오네요. 그렇게 되는데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약 40.8%가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번에 채무조정안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추경에 반영을 해 놔는데 올해 0.7조고 내년까

지 포함해서 3.6조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정태호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예요. 우선 첫 번째는 잠재부실 규모를 잡는데 지금 잠재부실 규모를 30조로 잡고 있잖아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정태호 위원 그런데 나이스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37조로 잡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는 심지어 72조로 잡고 있고. 그러니까 나이스신용평가가 잡은 것보다는 좀 근접하지만 7조나 적고 한국은행보다는 벌써 반도 안 되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0조 원의 부실채권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규모를 작게 잡는 것은 과연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적절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래서 경기회복, 지금 전 국제적인, 국제경제기구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개 경제성장률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면에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부실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현재의 부실보다도 훨씬 더 축소해서 산정을 했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을 해 보면 오히려 부실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올해 추경에 0.7조 원을 채무조정 예산으로 반영했고 내년도에 2.9조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되게 안이하게 보는 거다, 좀 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원금 감면 부분도 보면 60%에서 100% 정도 잡고 있는데 원금 감면 부분도 훨씬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PPP 이런 개념이 미국에서 해 왔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지금 우리는 PPP 이런 제도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부실채권 부분에 대해서 원금 조정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폐업을 하고 나서 조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채무, 부실채권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해 줘야 소상공인

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보면 올해 말이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흔히 얘기하는 소상공인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내년으로 연장을 해 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되게 소극적이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것은 우선은 부실채권들을 상환을 연장하고 또 이자율을 낮춰 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10년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 더 늘려야 된다. 20년 정도로 기간을 늘려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1억 판매하는 사람이 1년에 1000만 원 이자를 어떻게 냅니까? 기간도 더 늘려 줘야 되고 또 부실화된 채권은 원금을 더 조정하는 것을 더 늘려 줘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인수위에서 굉장히 폭넓게 금융지원방안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환율이 뜨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조금 더 불안정한 상태로 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될, 필요한 것으로 대내외적인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에서 30조에 해당하는 기금을 마련을 해서 은행권에 있는 부실채권에 해당되는 것을 캠프를 통해서 인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주신 것처럼 저금리에 상환기간을 더 길게 하고 심지어 예상되는 부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떠안을 준비를 일부 하면서 기금 조성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0조가 넘어가는 올해 1차 기금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보시면 또 물가상승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통화량이 시중에 많이 풀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정책적 자금들을 올해 진행을 하면서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더 적극적 고민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의견은 반영을 해서 금융위나 정책당국 이랑 같이 한 번 더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결국은 캠프가 이런 부실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부실채권들을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맞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 출연금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규모로 해 줘야 될 시점인데 출연금이 적으니까, 캠프가 그것을 위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여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이 좀 더 경제당국하고, 기재부하고 금융위하고 좀 더 강하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알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금액을, 자금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까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말씀처럼 그 대상이 저희가 주무부처로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한도액 상한이라든가 자금 신설, 펀드 신설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만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홍정민 위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만 위원 추후 예산소위에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라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손실보전금을 1차나 2차 때는 방역지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을 했습니다라는 실제로 구제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차 때 100만 원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신청 마감기한을 제대로 정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안내하지 않았어요. 첫날 같은 경우는 마감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한 내의 미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를 구제해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여러 의원실로 관련 이메일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구제해 달라, 방역지원금 미신청자도 꼭 좀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당시 중기부

입장은 당시의 지급 대상 숫자 예정치보다 실제 지원금을 수령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더 많아서 현재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전금이고 방역지원금이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법률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기한 내 신청요건’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행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는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을 통해서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숫자보다도 더 많이 확대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차제에 1·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지나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의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들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난 1·2차 때 352만 명, 364만 명을 실수령자로 지급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370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숫자의 차액만큼 구제 예산을 신청했으나 못 받은 소상공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금번에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피해 부분이라든지 매출 감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들에 대해서 폭넓게 안고 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이런 의사 표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1·2차 때 정말 이 부분은 본인들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가 정한 요건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불만과 민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금번에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저희가 보통 신청하는 기간 동안에 홈페이지랑 공고문, 보도자료 등에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을 통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증 되어 있는 분들의 핸드폰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문자까지 기존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4주 동안

내내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충분히 일을 했기 때문에 구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은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디지털에 취약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 국세청을 통해서 얻은 주소지로 우편 발송까지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사업도 그렇고요, 해당했을 때 5% 정도의 분들이 신청을 아예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구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기존에 그분들의 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똑같이 관련한 팀들을 해당 업무에 배정하기가 지금 업무로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에 23조라는 대규모의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온전하게 진행을 하고요. 말씀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신지 그리고 그것을 신청의 절차를 통해서 구제해야 되는지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먼저 산자부 이창양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아까 하셨는데요. 그리고 산자부의 예산안 개요를 보면 킨텍스 제3전시장 2022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정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른 3단계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 본예산 145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추경안에서 145억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도 전액 삭감을 숨기기 위해서 비겁하게 산자위에서 공사비 136.7억만 삭감을 하고 설계비는 예결위에서 8억 2000 삭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전액 삭감되는 시나리오인데요, 저는 산자위 예결소위 위원이기도 하고 또 예결위 위원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설립으로 우리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고양시민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경기북부 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는데요, 그럴 것이 아니라 현재 잘 진행 중인 사업이나 발목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영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경만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랑 유사한 측면인데요. 연초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건디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동의합니다.

○홍정민 위원 그런데 당시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상당합니다. 저도 전화도 많이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에 보시면, 방역지원금 공지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청 사이트나 공지 받은 문자에서 마감 날짜가 없이 시작 날짜만 표기돼서 ‘언제 신청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서는 그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2차 때는 신청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두 달 넘게 신청을 받았던 1차 재난지원금 때를 생각하다가 놓친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손실보상금 등 자금 종류가 많아서 혼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소상공인분들께서 분명히 억울하고 개인의 부주의로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충분히 준비를 해도 신청하시는 분이 불편하시거나 정보 전달이 안 됐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정민 위원 특히나 저희 지역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연령대가 높아서 IT 기기 활용이 능숙하지 않거나 워낙 영세해서 생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더 어려운분들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국가가 더 신경쓰고 특별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동의드립니다.

○홍정민 위원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장관님이 의지를 갖고 있어서 다행이신

데 이미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신청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기한 연장 공고도 내놨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대전, 천안, 홍천, 전남 등 많은 곳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예산편성도 추가로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그런 의지가 있으신 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집행을 해야 될 주무부처다 보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부처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요. 해야 될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서……

○홍정민 위원 장관님, 단순히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사소한 과오로 국가의 방역조치로 인해 마땅히 지원받아야 했을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추가 구제조치가 없다면 이 자체가 불공정이고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복리 증진보다는 행정편의를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1·2차 방역지원금에서 누락된 소상공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산자위는 물론 예결위에서까지 끝까지 확보하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그 말씀은 제가 경청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23조의 제공을, 각각 전달드리는 부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1·2차 때 있었던 접근성에 대한 미비했던 부분은 최대한 고려해서 더 많은 준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수치도 있는데요. 그 수치를 100%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되는 신청에서 늘 모든 것을 중기벤처부에서 집행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5%~10%가 꾸준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이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범주를 두 번의 재난지원금에서 굉장히 크게 웃돌았었다면 저희가 더 많은 준비를 했었을 건데 평균적인 숫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을 좀 해결을 하고요. 준비된 TF팀을 다시 한번 이 목적으로 만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정민 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좀 신속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 꼭 반드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그런데 이번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힘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정민 위원** 이번이 아마도 손실보상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누락된 분들은 정말 억울해하고 피해자연합 대표님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자료 드릴 테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김해 김정호 위원입니다.

예결심사소위원이기 때문에 심사할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산자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두텁고 빠르게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코로나 방역 협조로 입은 피해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얼마나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이영 후보께서도 국회의원 시절에 당론으로도 채택을 했고요. 여기 앞에 계신 최승재 위원님께서 머리로 깎고 오랜 농성까지 하시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달라져서야 되겠나, 이래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받지 않는가, 참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선 때에는 윤석열 현 대통령께서 정말 입에서 침이 튀도록 ‘손실보상, 화끈하게 실질적으로 보상하겠다’라고 공약을, 큰소리를 뽕뽕 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났다고 벌써 공약을 파기하고, 표 달라고 소상공인들한테 막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이제 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선 공약 파기가 대선 먹튀로, 이렇게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를 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당선되었다고, 여당이 되었다고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까지 내팽개쳐서야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2차 추경 우리 산자위에서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당초 다들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약속한 대로 두텁게 더 많이, 빠진 사람 없이 소급해서까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추경안이 증액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여야 간에 합의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 최승재 위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약 150조 추경 편성됐는데 그중에 40조 정도가 소상공인들한테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재정 투입했는데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지금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후 59조 중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낼 것 빼고 26조, 소상공인 관련해서 정부안이 제출됐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난번 2월 달의 1차 추경 때도 보면 300만 원 지원금 나왔지요? 100만 원 나왔는데 그때, 대선 때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동안 코로나 때 행정명령 내린 사람들한테 우선 보상에 관련된 부분에 치중하지 않고 그때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다음에 행정명령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지원금으로 먼저 편성해서 나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소급적용한다고 여야 합의했다가 유야무야됐었고.

그래서 이번의 추경은 우선적으로 대선 때 서로 합의된 내용으로 급한 대로 약속 지키는 거고. 먼저 일단 약속 지키는 내용이고, 그 당시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700조라는 국가부채가 발생되다 보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되도록이면 부채 발생 안 시키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일단 긴급하게 돈도 좀 약속한 것도 지키고,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채 발생 안 시키고. 두 가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장관님? 그런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맞습니다.

○**최승재 위원** 그래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계속 제가 중기부한테 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장관

한테 ‘왜 소득 파악이 안 되냐, 행정명령에 대한 손실보상이 안 되냐’ 질문을 계속 했었어요. 하니까 소득정보시스템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정부가 보상을 할 수가 없다. 매출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얼마 전, 17일날 기재부장관이 손실보상을 위해서 실시간 소득 파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이 과학적, 그나마 이번에 인수위에서 과학적 추계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냈다는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난 정부에서 그 추계를, 소득 파악을 안 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넓이를 계속해서, 보상과 지원, 복지 개념을 흘트려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전혀 보상과 지원을 구분을 못 하게 흐트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 파악이라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지 되는 게 우선이고, 우선은 지금 약속을 지키고 우선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 내는 부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욕구를 가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해 약속을 좀 지키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부 다 힘들지요. 간접피해업종이라는 부분으로 넓혀 간다면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왜 소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상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 수백조를 썼는데, 수십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소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리어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꼴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소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소상공인들을, 선거 때마다 추경을 계속했던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소상공인들을 과연 누가 선거 때 이용하고 바보로 여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급이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소급과 보상과 복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발표 때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지원금 격차가,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연 매출 2억 정도의—예를 들게요—음식점 5개 정도를 개별 업자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 내지 않고 장사하면서도 코로나 보상도 받고 각종 지원금 받았습니, 소상공인이라는 이름하에. 이번 추경에서도 손실보전금 받지요. 600만 원씩 5개 매장 30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법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지원도 하고 세수의 투명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산으로 하게 되면 성실하게 납부했는데도 연 매출 10억이 넘었다고 해서, 30억이 넘었다고 해서 손실보상이나 지원금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30억까지 보전금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금에는, 지금 손실보상법에 있는 보상금은 예산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상금은 이번에 예산을 한번 책정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생뚱맞게 이번에 갑자기 연 매출 100억까지, 개인사업자를 100억까지 한다는 게…… 그러면 도대체 왜 처음부터 소상공인지원법에다가 넣었는지, 이것 손실보상법에 소급한다는 것을 넣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전 국민, 재벌까지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벌도 다 간접피해업종이지요, 그러면. 100억까지 손실보상금이 나가도록 요구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번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게 포퓰리즘이고 선거 대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인사업자와 합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장관님께서 다 파악 좀 해 주시고 거꾸로 법인 업자들 그다음에 법인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 이번에 보전금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차 방역지원금, 잔여지원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전용을 시켰을 것 같은데 불용이나 지원 전용액이 생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춰서 한번 좀 감안을 해 주시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지금 저한테 세 가지를 말씀 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조금 더 데이터 확보를 미리 하여서 피해가 발생한 곳에 지금 이 되는, 보상이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정된 자원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의사를 주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몇몇 위원분들이 숫자가 없으면 맥시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예를 주셨는데요. 시기적으로는 1년 반 전에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이랑 개인과 관련해 가지고 자격 부분을 심사하는 것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예를 주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시스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을 받으셔야 될 분들 그리고 지급이 되신 분들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이 끝난 뒤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구제 여부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또 그분들이 이번 추경의 대상자들이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고 그 타깃 DB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달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의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영 위원 양의원영입니다.

이영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하신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온전하게 손실 보상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양의원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지고 오신 내용을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당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국회 본청 앞에서 설 연휴도 반납하고 국회 행동이라고 했는데 농성까지 한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청와

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저희가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대선 때 우리 민주당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온전하게 소급적용해서 손실보상하겠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영 장관께서도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기억이 명백하게 살아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현재까지 현금 지원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방역지원금 등등 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31조 5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얼마입니까? 3.5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충분한 손실보상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돈을 줬으니까, 방역지원금이라든지 회복자금이나 그런 것을 줬기 때문에 손실보상은 더 주면 플러스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다’ 이렇게 계속 중기부에서 주장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위에서 과학적 추계로 2020년, 2021년, 2년간 통틀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54조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추계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기조실장, 일어나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조실장님이 검토하시겠다는 걸로 얘기하신 거지요?

장관님, 지금 기조실장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지금 저희가 인수위의 기본적인 자료를……

○양의원영 위원 인수위에 이 자료를 중기부에서 제출했다고 분명히 기조실장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중기부에서 그것을 계산해서 냈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것 들으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아니요, 저기……

○양의원영 위원 분명히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거고 제출하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끝까지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출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제출하셔야지 예산소위의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손실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손실보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건 하나…… 제출하세요. 오후에 예산소위 때까지 제출하십시오, 실장님.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그 부분 잠깐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양의원영 위원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위원님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용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조금은 오해 부분이 있으신데 실제로 저희는 기본데이터를 제공했고요. 그 기본데이터가 저희 쪽에서만 오지는 않습니다. 국세청도 오고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오고 다양하게 모인……

○양의원영 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은 자세하게 얘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출하신, 기재부에 제출을 해서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2년치 손실추계, 과학적 추계 54조 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시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다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짧게만 하나 더 드릴게요.

○양의원영 위원 아니, 거기까지 하시고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위원장 이학영 기조실장님, 앉으세요.

○양의원영 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제출하시고요. 그래야지 제가 예산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저는 이게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왜 35조밖에 가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정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들이 연간 대출을 받는 비용들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증가한 액이 있어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요. 그게 1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가 연장된 것만 133조 원이고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에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분들이 27만 명, 72조 원이에요. 그런데 35조로 이게 다 끝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손실보상 얘기한 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7조 원만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것만으로도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는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일단 지금……

○양의원영 위원 이 액의 차이가, 이 돈의 차이…… 실제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소상공인들 대출이 100조 이상이 증가했어요, 평소에 빌리던 돈 말고 추가로. 그리고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1년 내에 완전히 파산할 것 같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의 대출이 72조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것 같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위원님, 2020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피해 지원으로 지난 정부에서도 굉장히 발 빠르게 노력을 해 주셔서 100조가 넘는 금액이 일단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경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방역……

○양의원영 위원 다시요, 소상공인들께 100조가 넘는 돈이 지급이 됐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현금이 36조 지급됐고요, 금융 지원으로 70조가 나갔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금융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 지원은 언제든지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갚아야 되는 돈을 지원했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PPP 제도 알고 계시잖아요. 대출을 아예 삭감해 주는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왜 그 차이가 발생하는지 모르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아니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의원영 위원 아니, 왜 그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여쭙봤잖아요. 왜 그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가장 큰 것은 정부가 방역조치 명령을 내린 곳, 영업제한조치를 내린 곳을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

○양의원영 위원 모르시는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인수위 때 발표로 이미 얘기하셨는데 영업이익에 대한 손해만 계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장 이학영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영 위원 소상공인들 영업이익률이 몇 %인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그런데 매출은 업종에 따라서 너무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양의원영 위원 소상공인들 영업이익률이 몇%인지 아세요? 14%밖에 안 돼요. 음식업이라든가 숙박업,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데가. 거기는 고정비가 이것의 몇십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소위 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준비를 해서……

○위원장 이학영 마무리해 주십시오.

○양의원영 위원 그때 다시 얘기하시지요. 그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회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료 제출 관련해서 조금만 한마디만 드리면 중기부 포함해서 여러 부처가 기본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인수위에. 드린 그 데이터를 100% 사용하셨는지 20%를 사용하셨는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의원영 위원 그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 판단은 저희가 한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 판단은 어쨌든 저희가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위원장 이학영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이철규 위원입니다.

정권이, 정부가 바뀐 지 열흘도 채 안 됐는데 우리 여당 위원, 야당 위원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논리가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좀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논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고 보호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 소급해야 된다고 주장해 온 장본인입니다. 법안을 두 번씩이나 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당시 다수의 집권 여당 위원님들의 약속 파기로 손실보상규정이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정부도 소급적용을 하지 못했고 온전한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손실보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능한 범주 내에서 1조 5000억의 손실보상 재원만, 법 시행 이후의 것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지 이게 공수가 뒤바뀌어서 갑자기 이렇게 정치 공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이철규 위원 손실보상 법적 근거 없이 소급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불가능합니다.

○이철규 위원 불가능하지요.

그다음, 바로 열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기부에 손실 추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시의 야당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줄기차게 요구할 때 중기부가 자료의 정확성 또 여러 가지 혼란을 우려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고 당시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그것을 같은 논조로 방어해 왔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마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기부의 공직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일 겁니다. 어떤 논리로 인해서 당시에 추계가 불가능했는지 또 추계가 유출됐을 때 어떤 혼란이 왔을지 그 논리가 무엇인지 이따 소위 때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관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아직 상임위를, 산자위에서 활동하지 않고 또 업무보고를 받고 짧은 기간이라서 아마 일관성 있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선 보상하고 지원이 다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다릅니다.

○이철규 위원 다른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개정 없이는 보상이라는 말을 쓸 수 없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하면 먹튀, 선거 때 약속을 해 놓고 대선 먹튀했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로 너무 비약적인 말씀이고 여기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 대통령은 선거 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을 하겠다, 법 개정 없이도. 그다음에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 손실액을 소급해서 추산하고 추계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마치 대통령이 득표를 위해서 국민들을 속여 먹은, 거짓 공약을 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장관께서 직접 참석하진 않겠지만 차관이 예산 심사할 때, 소위 때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또는 설명 요구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에서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는데요, 130억 정도가. 이 감액이 새 정부 들어와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지난 정부 때 이미 사실상 결정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지난 정부 때 사실상 검토가 많이 됐다고 보입니다.

○**이철규 위원** 결정된 거지요? 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집행되지 못하니까 미룬 건데 선거가 있어 가지고 마치…… 이런 것들이 선거에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킨텍스의 예산 조정은, 금년도에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맞습니다. 그동안에 예타 이후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사실 현재 예산으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설계 적정성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 이영 장관님, 장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첫 임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추정처리를 맡게 되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이번 추정안의 중요한 내용이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물론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쟁점이 되고 있어요, 소급적용 여부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쨌거나 이런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작년에 법 제정 관련해서 논란도 있지만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모두 소급적용을 통해서 손실보상 두텁게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제가 같이, 후보들이 참여했던 1월 18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 하례식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걸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분명한 본인의 의지를 말씀하셨고요.

당연히 연설 때 후보 공약으로서 그 부분을 누누이 언급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사실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저희들이 여당이었을 때—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대선후보들이 그러한 공약을 약속했다면 지키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제 와서 지켜야 된다,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게 정도가 아니더라는 얘기,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꼼꼼하고, 새 정부가 언급한 대로 우리 야당하고 같이, 후보가 발언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야당에서도 책임지고 심사를 할 테니까 분명히 소급적용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추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인수위에서 처음에 발표했던 것 이후에 플러스 알파해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변경된 내용에서는 당연히 그런 국민적인, 소급적용에 대한 상인들의 목소리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억나시겠지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과학적 추계라고 하는 전제하에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54조 원 손실액, 이 추산 자료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회든 기관이든 부처에서 제출한 안들 중에서 중기부가

제출한 안도 있겠지만 어차피 인수위가 이렇게 발표하고 국회로 넘어왔을 때 중기부로서는 당연히 그 후속 자료라도 살펴봐서, 이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600만 원씩에서 1000만 원까지 균등 있게 차별 있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판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산 근거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국세청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을 해 봐도 20년 한 해만 보더라도 자영업자 영업이익 손실 규모가 43조 9000억에 달한다고 나왔어요, 43조 9000억. 그래서 과학적 추계라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저희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현금 지원 외에 사실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배드뱅크 얘기가 나왔었지요, 포함되었고. 그런데 이 부분 말고도 또 고정비와 관련해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임대료 나눔제 이 내용도 같이 종합적인 대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임대료나 임대료 나눔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반영이 되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는데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지금 추경에 발표된 안에서도 사실 보면 임대료에 대한 얘기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임대료 나눔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 시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강제화할 수는 없고요. 임대인과 또 임대를 받으신 분들 사이에서, 임대주 사이에서 굉장히 사회적 합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후보님 발언하고 장관님 발언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임대료와 임금인데, 임금은 상당 부분 고용을 줄임으로써 견뎌 내셨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살펴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말 부로 문재인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해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권이 이 부분을 강제화하기에는 사회적인 합의를 가져가는 명분이 굉장히 약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돌렸냐면 손실보상에서 임대료 부분이랑 임금 부분을 다 넣고 보정률을 100으로 맞춰 가지고 지난 부분을 보정하는 쪽으로 지금 대안을 만든 겁니다.

○이동주 위원 그러니까 당시 후보고 지금 대통령은 세제, 격리조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런 것 염두에 안 두고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아니, 이 부분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갈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어차피 결론은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정을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강제화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사회적……

○이동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사유재산의 강제라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감안해서 공약했었던 것 아닐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가려고 어느 정도는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일 날 그냥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부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기존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전과 같은 속도와 강도로 가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없으니 이 임대료나눔제에 대한 부분을 손실보전금으로 돌린 겁니다. 아니, 손실보상 쪽으로 돌린 겁니다.

○이동주 위원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소한 1년 주기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 영향, 매출이 안 나와서 임대료가 채납되는 게 3개월 경과가 됐을 때 사실은 분쟁이 생기겠지요.

그런 것을 두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그 공약을 현실화해서 제도로 만들든 보전을 거꾸로 과거에 생겼던 매출감소로 인해서 채납됐던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든 안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그것을 손실보상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동주 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저희가 소위 때 따져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의 마지막으로 한무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또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학영 마지막이니까……

○한무경 위원 마지막이지요?

○위원장 이학영 예.

추가질의를, 한 분 하시겠습니까?

○양이원영 위원 예.

○위원장 이학영 추가질의 3분 있으니까 주질의 끝나고 한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무경 위원 이영 장관님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 보니 궁금한 점이 참 많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위원님들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2021년 5월에는 그 당시에 여야가 다 소급적용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6월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당정협의를 거치고 나서는 소급적용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그 위원님의 발언 내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시면서 소급적용을 뺀 법안을 그 당시 우리 산자위는 전부 다 전원일치였는데 기립표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 우리 이철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더니 다시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소급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뭘니까,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님도 하시겠지만 이 소급적용을 못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법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소급적용은 여야가 앞으로 법안으로써 풀어 나가야 될 문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맞습니다.

○한무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법안에 소급적용을 넣었느냐 아니면 이걸 말았느냐 하는 이 논쟁은 소상공인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손실보전을 신속하게 진행해야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권칠승 전 장관님 시절 때 이 소상공인 손실 추계 자료를 좀 보여 달라. 저희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손실보상 자료를 만들었는지 추계 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때 자료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시다.

반면 제가 참 궁금한 게 그러면 현재 중기부 직원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자료를 지금은 어떻게 만들어서 인수위에 자료를 줬을까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부실한 자료, 똑같이 우리에게 제출하지 못했던 그 자료가 그대로 인수위에 보고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없었던 추계 자료가 지금 갑자기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부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약 7조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7조 원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한테 핵심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00억이나 또는 160억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혁신 개발에 대한 R&D 지원 사업들이 대폭 감액이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이 R&D를 제가 보니까 절차를 좀 당겨서 해야 되는데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뭐라고 합니까, 성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시 감액을 한 경우가 있던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 R&D 자금은 순연되어서 그다음 해에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게 R&D 같은 경우에 과거 정부에서는 계속 미뤄왔던 것으로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때에 공고도 내고 또 제때에 해답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R&D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가부채가 꽤 큰 비중으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국채 발행 없이 진행하려고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실제 감액된 금액이 608억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R&D 부분은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아니라요, 이게 빨리 심사를 끝내야 올해 안에 연내에 다 지급이 가능한데 한두 달 정도 심사가 지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연이 돼서 내년에 그대로 약속된 금액만큼 기업들한테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감소했지만 사업비는 감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마트공장 쪽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처음에 잡아놨더니, 저희가 스마트공장을 세 단계로 합니다. 초기·중기 그다음에 고도화 부분을 하는데, 중기 쪽에 편성된 금액이 큰데 중기에 진행될 기업의 수량 막상 진행을 해 보니까 초기에 더 연장되어야 될 기업의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만 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숫자 조정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적인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 위원님 오셔서 주질의 마지막으로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김성환 위원 이번 추경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데 우리 산업부의 지출 구조조정 총액이 4000억 남짓인데 그중에 탄소중립 예산이 2400억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김성환 위원 내용을 살펴 봤더니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신재생에너지 금융 융자, 녹색혁신금융,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등등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더 빠른 속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 보면 이렇게 2400억이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해야 된다는 것……

○김성환 위원 짧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된 것은 지난 3년간 집행률이 조금 많이 낮은 사업이나 지금 협약 지연 때문에 회계연도가 불일치해서 올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그 정도만 감액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산업부의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역진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김성환 위원 이번 추경 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텐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히 두렵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지요, 지난 대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김성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제 제외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는 사실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데 그야말로 연매출 기준이 10억이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법적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을 예를 들면 그게 방역지원금이고 지금은 손실보전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절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행법으로도 이미 중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반드시 손실보상 대상에 10억 이상의 매출을 갖고 있는 소상공이나 자영업자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번 추경에 10억 이상 30억 이하 중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것은 손실보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법적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그런데 이번에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 대신에 손실보전지원금이라고 용어가 된 것이……

○**김성환 위원** 그것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차등지급하는 내용이고, 법적 손실보상 대상에는 여전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포함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이렇다 보여집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370만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텐데 과거에는 액수가 적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600에서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소급적용까지를 포함하면 꽤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는데 이러면 필시 소위 소득역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100만 원이라도 이익 보는 사람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는데 100만 원이라도 손해 본 사람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소득역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불형평성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현재 기재부나 중기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저희가 해외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구간을 기존에 우리 정부가 했던 한 구간이 아니라 차등 구간을 주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에서 피해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겠다는 부분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김성환 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차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득역전 구간,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입이 약간 늘었더라도 소득역전 구간에 일종의 범퍼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위원님이 지금 주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 국민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가장 빠르게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 지난 정부처럼

원칙을 하나로 정했다가, 지금과 지금 아님으로 정했다가 역전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간별을 도입을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구간별을 도입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말씀 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보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소득역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분이 보충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짧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양의원영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영 위원** 양의원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뿐인 정부인 것인지 말과 행동이 정말 같은 정부인 것인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손실보상에 대한 것 추가로 질의할 것은 소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산업부에 질의를 할 텐데 장관님,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정과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라고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런데 앞서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409억 원, 삭감 예산 중에 59%가 탄소중립 관련한 예산이네요. 그중에 에너지 절약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 설치 용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용자사업을 대규모로 삭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스마트그리드에 관련된 AMI 설치사업도 삭감을 하셨고.

그런데 AMI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2267억 원에서 이미 1000억 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때 여기 뒤에 계시는 산업부 공무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000억 원 그렇게 감액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동남아에서도 전면적으로 다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억 원이 감액됐는데 또 그것을 50%를 또 감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걸 수요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차액 지원사업으로 기재부가 일괄적으로 다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민간 금융기관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지원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과 일상적인 대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그 시설 자체가 담보가 안 돼요. 담보가 되지 않아서 개인……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퇴직금 가지고 연금 받으려고 태양광 발전사업 하시는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소상공인 같은 분들이 신데 이런 분들이 대출에서 고금리로 지금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융자 지원사업이 무엇보다도 확대되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대폭 다 삭감을 하고 이자차액 보전 사업을 해라. 그런데 시중은행은 담보조차도 잡아주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 심사기간이 장기화돼서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세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간단히 설명드릴 수도 되겠습니까?

○양이원영 위원 어쨌든 경제 쪽으로 워낙에 전문가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그 AMI는 사실은 지금 올해도 집행률이 대개 조금 낮습니다, 예산 책정에 비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AMI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또 이번에 많이 겹쳤고요. 그다음에 AMI에 들어가는 작은 반도체들이 있는데요 반도체 부품난이 아시다시피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나 수요 모든 측면에서 사업이 조금 부진한 상황이 있어서 AMI는 아마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정을 한 면이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개선된다면 앞으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2차 보전으로 넘긴 사업들이 사업자

들이 금융기관을 상대해서 대출받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은행 가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안에 에너지공단을 넣어서 에너지공단이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직접 대출을 받는 그런 어려움은 최대한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잘 반영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학영 양이원영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양이원영 위원 예.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률안 및 추경안 등에 대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6항까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6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100항까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10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2항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3항 2022년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은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들을 잘 심사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강훈식·구자근·김경만·김성환·김정호·류호정·송갑석·신영대·신정훈·양이원영·엄태영·윤영석·이동주·이성만·이소영·이주환·이철규·정우택·정태호·최승재·한무경·황운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후보자는 답변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이 아니고 장관께서는 답변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상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오후 2시에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소위 산회 직후 속개하여 예산결산소위에서 심사한 추경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21인)

김 경 만	김 성 환	김 정 호	류 호 정
송 갑 석	신 영 대	양이원영	윤 영 석
이 동 주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장 섭
이 철 규	이 학 영	정 태 호	조 정 훈
최 승 재	최 재 형	한 무 경	홍 정 민
황 운 하			

○청가 위원(3인)

김 정 재	신 정 훈	정 우 택
-------	-------	-------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채 수 근
전 문 위 원	이 복 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이 창 양
제 2 차 관	박 일 준
통상교섭본부장	안 덕 근
기획조정실장	신 희 동
산업정책실장	주 영 준
산업혁신성장실장	황 수 성
자원산업정책국장	유 법 민
에너지전환정책관	천 영 길
재생에너지정책관	최 진 혁
수소경제정책관	양 병 내
무역정책관	박 재 영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이 영
기획조정실장	이 준 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변 태 섭
글로벌성장정책관	오 기 웅
기술혁신정책관	원 영 준
소상공인정책관	박 치 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이 은 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 봉 환

특허청

청 장	김 용 래
기획조정관	김 명 섭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5. 17. 배준영·백종현·구자근·최춘식·정우택·허종식·전주혜·안병길·이용·김상훈 의원 발의)

5월 1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하태경·김경협·김병기·백종현·송석준·신원식·양정숙·엄태영·윤창현·이병훈·주호영 의원 발의)

5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